

명예교수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 및 제한)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퇴직 당시 교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. 단, 총장 및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
1.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자
2. 본교의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이거나 업적이 현저한 자

② 제1항의 내용을 충족하여도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는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

제3조(절차) ① 명예교수 추대 절차는 학기 개시 2월 전에 소속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명예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 추대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소속 전공주임이 작성한 교육, 연구 및 봉사업적에 근거한 추천서
2. 연구업적조서
3. 이력서
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5조(직위 및 임기)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법규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예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취소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) ①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하거나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강의 담당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담당과목은 전공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을 원칙으로 하되,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명예교수에 관한 처우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명예교수가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할 경우 무급으로 한다. 다만 연구에 필요한 연구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④ 명예교수는 본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부 칙(제정 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폐지규정) 교직원인사규정의 특수신분교수(명예교수)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